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. 12. 10 선고 2020가단288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20. 11. 19

판결 선고 2020. 12. 10

주 문

1. 원고에게,가. 피고들은 각 1/4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양평군 F 대 377㎡ 지상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 철거하고,위 토지를 인도하며,나. 피고들은 2015. 7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연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철거하고,경기도 양평군 F 대 37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인도하며,2015. 7. 1.부터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200,000원씩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B,C, E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 피고 D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일부 기각

애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망 G가 2008. 10. 27. 사 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을 각 1/4상속지분의 한도로 상속하였으므로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각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.

판사 채승원

별지